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	보 도 자 료 배포 시 보도 가능	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

작성부서	생명보험협회 홍보실	손해보험협회 홍보부	
책 임 자	실장 김경래 (☏ 2262-6610)	부장 김영산 (☏ 3702-8651)	
담 당 자	팀장 류종석 (☏ 2262-6673)	팀장 이웅노 (☏ 3702-8582)	
배 포 일	2022.12.29(목)	배포 부서	생명보험협회 홍보실 (☏ 2262-6605)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(☏ 3702-8655)

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

주요 내용

1.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

□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

□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

□3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(10억원→20억원)

2.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

□1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

□2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

□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

□4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

3. 보험회사 회계 · 건전성제도 개편 등

□1 K-IFRS 제1117호 '보험계약' 회계기준(IFRS 17) 시행

□2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

□3 1사 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

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

<table>
<tr><th>주요 내용</th><th>관련 근거</th><th>시행 시기</th></tr>
<tr><td>

□ **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**

○ **(단체실손 중지제도)** 보험회사와 계약자(법인 등)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(종업원 등)가 **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*** 가능

* 보험회사가 피보험자(종업원 등)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직접 환급

○ **(개인실손 중지제도)** 개인실손 중지 후 **재개시***, **'재개시점 판매중 상품'** 또는 **'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'** 중 **선택하여 재개 가능**

*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,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시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

</td><td>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</td><td>'23.1월</td></tr>
<tr><td>

□ **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**

○ 개인·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**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** 및 **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**

* 연금저축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원) → 600만원(900만원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종합소득금액
(총급여액)</th><th colspan="2">세액공제 납입한도
연금저축(퇴직연금 포함)</th><th rowspan="2">세액
공제율</th></tr>
<tr><th>50세 미만</th><th>50세 이상</th></tr>
<tr><td>4천만원 이하
(5.5천만원)</td><td rowspan="2">400만원
(7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
(900만원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1억원 이하
(1.2억원)</td><td rowspan="2">12%</td></tr>
<tr><td>1억원 초과
(1.2억원)</td><td colspan="2">300(700)만원</td></tr>
</table>

⇓

<table>
<tr><th>종합소득금액
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납입한도
연금저축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
공제율</th></tr>
<tr><td>4.5천만원 이하
(5.5천만원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
(900만원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4.5천만원 초과
(5.5천만원)</td><td>12%</td></tr>
</table>

○ 연금소득 **1,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**

* 1,200만원 이하 : 저율·분리과세(3~5%) 또는 종합과세
1,200만원 초과 : 종합과세 → **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**

</td><td>소득세법</td><td>'23.1월</td></tr>
</table>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□ **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(10억원→20억원)** ○ **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**를 위해 **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**하고, 보험금 청구시 **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**	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(생보협회)·운용지침(손보협회)	'23.1월

2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□ **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** ○ **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**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**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** * (기존)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→ (개선) '병실사정'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, 병원급 이상만(의원급 제외) 상급병실료 인정	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·표준약관	'22.11월
□ **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** ○ 교통사고 경상환자(12-14급)가 치료를 받는 경우, **치료비 중 대인 I 한도 초과분**에 대해서는 **본인 과실만큼 본인(자손·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)이 부담** * (기존)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→ (개선) 대인II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	표준약관	'23.1월
□ **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** ○ 교통사고 경상환자(12-14급)의 **4주 초과 장기치료시**,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**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** * (기존)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 → (개선) 장기치료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 가능	표준약관	'23.1월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□ **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** ○ **소비자의 권익 제고**를 위해 가능한 **수리유형 확대** 및 **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** 등 기준 정비 **<주요 내용>** 1.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(제3유형*)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가능하도록 개선 * (제1유형) 코팅 손상 / (제2유형) 색상 손상 / (제3유형) 긁힘·찍힘 2.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 신설 3.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,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등	표준약관	'23.1월

3 보험회사 회계·건전성제도 개편 등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□ **K-IFRS 제1117호 보험계약(IFRS 17) 시행** ○ 보험계약 관련 **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** 위해 **원칙중심**의 **국제회계기준 도입** * (주요 변경내용) 부채평가기준: 원가평가 → 시가평가, 수익인식기준: 현금주의 → 발생주의	보험업법 시행령·감독규정·시행세칙	'23.1월
□ **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** ○ **IFRS 17과의 일관성 유지, 국제적 정합성 제고**를 위해 **경제적 실질**을 **반영**하는 **新지급여력제도 도입** * (주요 변경내용) 자산·부채 시가평가, 장수·해지 등 신규위험액 추가 및 산출방법 정교화(충격시나리오법 도입)	보험업법 시행령·감독규정·시행세칙	'23.1월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□ **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** ○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·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**보험업 허가정책(1사1라이선스) 유연화** **<주요 내용>** 1.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·특화할 경우, 진입 허용 2.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허용 (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) 3. 온라인 영업이 제한*되었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CM 채널(모바일, 홈페이지) 활용 허용 *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	보험업법 등	'22.11월